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박미영 의원 발의】



2019. 6. 1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26호로 2019년 6월 5일 박미영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7조)
- 나.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8조)
- 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9조)
- 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0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청소년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편성
- 다. 입법예고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건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37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38조에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39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안 제40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음.
- 근로 청소년의 대부분은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익 침해와 부당한 차별을 겪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의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